

# 제품결함으로 인한 하자, 생산업체로부터 보상받아

이야기를 하나 하련다. 무려 5년간에 걸친 긴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설비시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이야기를 말이다. 이 글을 읽고 죽자는 자화자찬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글이 우리 설비업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러한 혹평을 들어도 좋다. 이 글을 계기로 진정한 하자라고 인정해 줄 공인기관이 설립되어 시공 회사가 제품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설비업계의 권익보호에 밀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용기를 냈다.

박진관/(주)국제종합토건 설비부 부장·배관기능장

## 1. 서론

건물 준공후 발생되는 하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설비공사의 하자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많은만큼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경우 단순하게 처리되나 설계 또는 자재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하자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특히 자재의 결함으로 발생된 하자는 그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인해 줄 관련기관조차 없어 시공회사가 입는 피해는 실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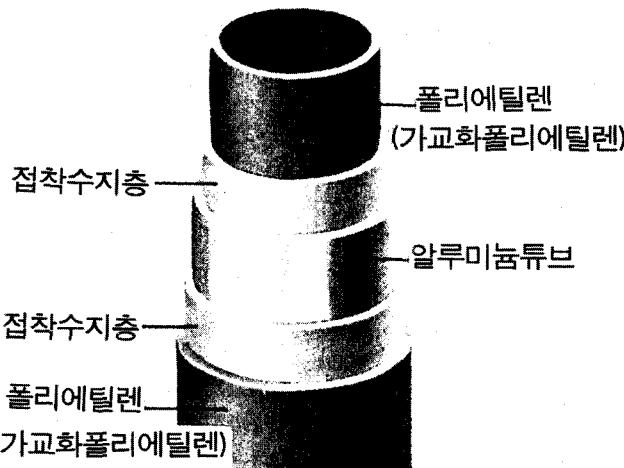
따라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생산한 음용수용 파이프를 시공하여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발생된 하자사례를 필자의 경험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 2. 원도급업체의 강압적인 지시로 문제의 파이프 시공

건축용 배관자재로 사용되어 왔던 수도용아연도금강관(SPPW)에서 녹물 발생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94년 수도용아연도금강관 사용을 금지하고 건설교통부 고시(93-350 93. 9. 20)에 의거, '94년 4월 1일부터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 배관자재로 「K.S 규격품 14종」외에 기타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 배관재료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배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사용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관재업체에서는 음용수용 배관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음용수용 배관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많은 배관재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국내 굴지의 3개 대기업이 3중 복합파이프(폴리에틸렌(Polyethylene) 또는 가교화폴리에틸렌(Crosslinked Polyethylene) 사이에 알루미늄을 삽입한 파이프) 생산을 시작해 U기업의 카-



〈그림 1〉 3중 복합관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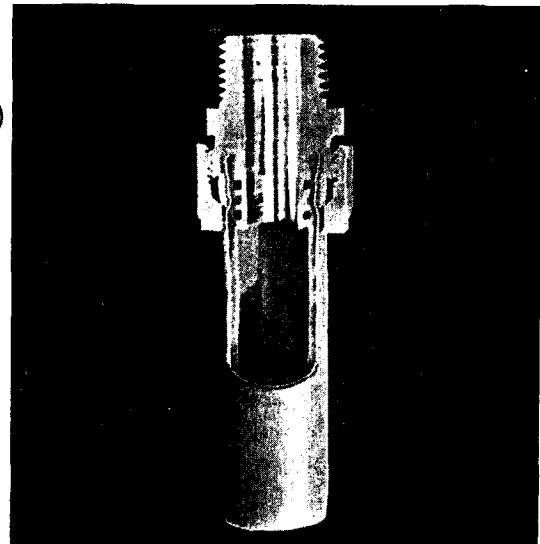
이텍 파이프와 H기업의 매풀 파이프, L기업의 메타폴 파이프가 3파전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필자는 모기업에서 실시한 신제품발표회에 참가하여 이들 제품의 문제점 및 부속 연결구의 시공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관계자와 심한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제품중 한 제품이 당시 필자가 근무하던 회사(K기공)에서 시공하던 아파트 현장에 사용하게 되었다.

당초 음용수용 관은 PB(Poly Butylene)관으로 설계되었으나 원도급업체에서 갑자기 설계변경을 하면서 3중복합관 중 모제품을 지정하여 사용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필자는 모교인 창원기능대학 교수님께 자문을 받음은 물론이 제품으로 아파트 급수배관 시뮬레이션을 설치하여 제품의 구조 및 시공성 등을 검토한 결과 3중복합관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AL관에 용접이 되어있지 않았고, PB관의 경우 파이프와 부속 연결시 공구가 필요없는데 비해 이 제품은 공구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필자가 원도급업체 담당자에게 이 제품



〈그림 2〉 3중 복합관 이음쇠 단면도

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공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담당자는 필자의 말을 무시하고 설계변경을 시켜주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압력을 가했다.

하도급업체인 약자의 입장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라면 하는 수 밖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공에 들어갔다.

그 후로 제품 생산업체의 영업소장이 원도급업체 담당자에게 영업을 하여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분노를 느낀 필자는 그 영업소의 제품을 납품받지 않고 서울영업소와 직접 거래를 하자 영업소장이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내가 영업을 하여 그 현장에 우리 영업소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당신은 왜 우리 영업소의 제품을 쓰지 않느냐?”고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다. 건설업체의 추악한 실정이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원래 음용수관으로 선정되었던 PB관은 작업성이 간단함은 물론 m당 120원인데 비해 이 제

품은 m당 560원으로 4배 이상이나 비쌀 뿐만 아니라 부속도 4~5배나 비싼 고가의 제품이었다. 그런데도 굳이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자재업체는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 제품을 각 현장에 시공했다는 납품실적을 쌓아서 이를 영업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금력에서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이러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 과다한 투자를 하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우려했던 이 제품의 문제가 시공단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장의 기능인들이 처음 사용하는 제품인데다 이음쇠 부분의 고무패킹이 제대로 끼워지지 않아 수압을 보면 누수가 다량으로 발생되었고, 제품의 탄성이 부족하여 외부의 물리적인 힘을 받았을 때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아 부득이 재시공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준공무렵부터는 더 큰 문제로 볼거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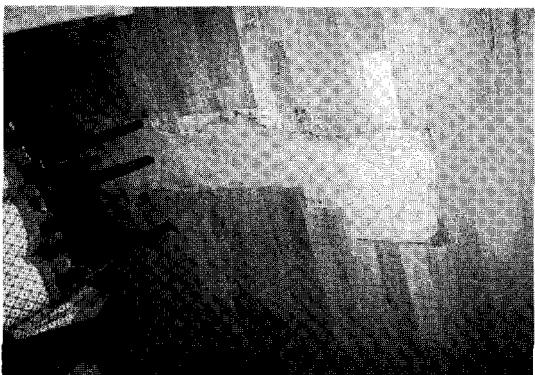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급수관 내의 물을 배수를 시킨 후 입주를 한달 앞둔 94년 4월경 배관내에 물을 넣자 여기저기서 누수가 발생하여 바닥 장판을 걷어내고 배관을 보수하는가 하면 벽체와 화장실 타일을 깨어내는 등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데도 정작 제품을 생산한 업체 관계자 및 설계변경한 원도급업체 담당자는 얼굴한번 나타내지 않고 하도급업체인 설비시공회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들었다.

원도급업체는 설비시공회사가 겨울철 물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우겼다. 그러나 똑같이 물빼기를 한 난방관은 멀쩡한데 유독 3중복합관만 동파된 것이라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준공단계에서 발견된 파이프 동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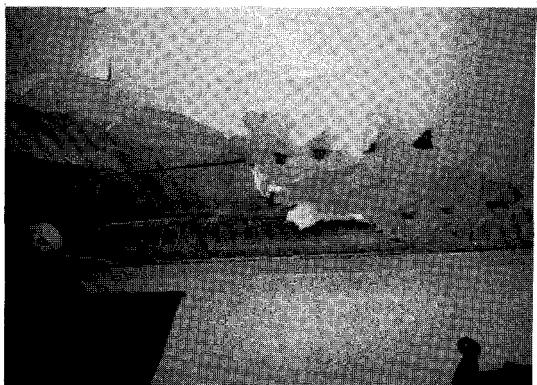


배관보수를 위해 뜯어낸 미루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시공한 난방용 배관(X-L PIPE 및 동판)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비해 급수·급탕관으로 사용한 3중복합관에서만 동파가 발생된 것을 놓고 시공상 부주의란 말인가?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하



누수관 철거후 X-L파이프 교체



상층부 누수로 하층부 천장이 내려앉음

도급업체에 전가시키려는 원도급업체의 행위를 보면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커져만 갔다.

당시 「입주자 사전 내집점검 제도」가 도입되지 얼마되지 않은 때라 입주민들이 점검을 나왔는데 자기가 분양받은 집이 배관보수를 위해 온통 깨부숴졌으니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더구나 원도급회사 설비담당기사의 행동은 필자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당시 필자는 설비업체에 15년 넘게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간간부(기술부 차장)였으나 이제

갓 현장에 배치받은 신참기사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그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키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필자는 설비시공회사를 그만두고 감리업체로 옮기는 원인이 되었다.

### 3. 문제해결을 위해 원도급업체에 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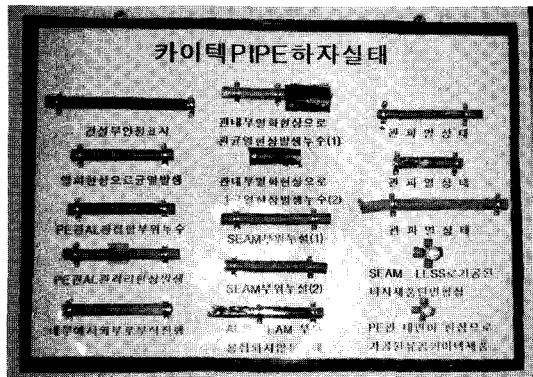
그 뒤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전에 몸담았던 설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이 파이프 파열로 인한 보수가 너무 힘들어 소장이 여러명 바뀌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주민들이 거실에 온돌용 마루판을 깔아 놓았다가 누수 발생으로 인해 마루판을 뜯어내어 보수를 해야 하는 등….” 설비업체는 그야말로 보상을 위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당시 감리제도가 한창 부활되던 때라 설비업체보다 근무조건이 나은 감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해 보니 설비시공업체 근무시에 비해 누워서 떡먹기였다.

그럼에도 빌주처의 감독관 및 원도급업체에서 당신같은 감리는 처음 본다고 야단들이었다. 지금까지의 감리들과는 달리 직접 시공현장에서 기능인들과 함께 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함은 물론 시정방법까지 알려주는 기술지도를 실시했기 때문이었다.

감리분야와의 마찰은 설비시공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겪기 마련이다.

그 당시 설비분야의 감리는 건축, 토목분야와는 달리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감리원이 부족하여 현장 실무경험이 없는 감리원들이 건설기계 기사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사실 하나(지금은 건축설비기사를 소지한 감리원들이 다수 있음)만으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실질적인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성 없는 관련규정만으로 업무를 집행하므로써 공사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 불량제품 하자실태 현황판

는 실정이었다.

감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무렵 3중복합 관으로 문제가 되었던 현장의 원도급업체(부산 지역 1군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연락이 왔고, 설비담당 부서장을 맡아달라는 최고경영자의 요청이 있었다.

몇 달을 망설인 결과 99년 2월 입사를 결정했다. 입사 후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3중 복합관과열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민원문제 해결이었다.

현장을 점검한 결과 물이 새어 벽지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고 천장이 내려앉은 세대가 있  
는가 하면 세숫대아를 반쳐놓고 물을 받아내는  
세대도 있었다.

물이 새는 부분을 보수하고 돌아서면 또 다른 부분에서 누수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보수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졌다.

입주민들의 원성도 글에 달해 있었다.

하도급업체는 이미 부도난 상태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다. 결국 건설회사에서도 파이프메이커에서 지정한 보험회사에서 일정부분을 보수해 주는 것을 따라야 할만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다. 더구나 3중복 환과은 '96년 6월 생사이 중단된 상태여서 음용

수관이 아닌 X-L 파이프로 보수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 4. 어디서부터 손을 댈 것인가?

우선 입주자 대표들과 회의를 열고 우리 회사도 피해자라고 인식시킨 후 입주자와 시공회사 공동으로 대기업(제품생산업체, 이하 대기업이라한다)에 보상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장, 필자는 문제의 대기업(당시 기업은 상호가 변경되어 있었음)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수거해간 샘플을 제시하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카이텍 파이프는 ’91년 9월 생산을 시작하여 ’96년 6월 생산을 중단했으며, 이 파이프와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누수가 발생되면 시공회사에서 보수 후 그 공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공사비를 지급할 것”이라는 답변 뿐이었고 제품생산을 왜 중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무려 8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기업 담당자는 모든 책임을 시공회사에 전가시키려 할 뿐 제품불량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또한 수십 차례에 걸친 피해보상 요구에 눈하나 까딱하지 않는 대기업의 행위에 홍분한 일부 입주민 대표가 책상을 뒤엎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소동이 일어나는데도 회사의 책임자 한 사람 나타나지 않고 뾰족한 답변도 없자 하는 수 없이 돌아서야만 했다.

대기업의 책임부재의 부도덕성을 보며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다.

500여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배관 전체 교체 시의 비용과다는 물론이요, 제품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하자임에도 건설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억울한 현실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만 하면 그만이라는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더



KBS 9 뉴스에 보도



기자에게 제품 불량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필자(오른쪽)

이상 묵과할 수는 없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언론에 호소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필자는 입주자 대표와 회사에 필자의 결심을 알렸다.

그러나 언론보도 이면에는 많은 문제가 따랐다. 우선 입주자들 일부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집값이 하락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회사는 회사대로 회사명칭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언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언론에 보도하기로 합의한 후 누수발생 부

위의 파이프를 수거하여 파열실태 현황판을 제작한 후 KBS 부산지사에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가 현장을 둘러본 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날 오후 KBS 부산지역 뉴스시간에 이 문제가 보도된 이후 지방 뉴스 시간에 10회, 전국에 1회의 보도가 나가자 그동안 끄떡도 않던 대기업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필자에게 선량한 입주민을 선동했다느니, 방송에 자기회사가 보도되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여전히 모든 책임을 시공회사에 전가시키려고 했다.

반면 입주민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만나 피해보상을 해 준 후 건설회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더구나 제품생산업체는 입주민들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고 건설회사와 거래를 했으니 건설회사에 피해배상을 요구하라는 등 입주민들을 은근히 부채질 했다.

이 말을 들은 일부 입주민들은 건설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 일부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건설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될 경우 건설회사는 또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이것은 계속 악순환을 낳을 것이 뻔한 일이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했다.

## 5. 입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방송보도가 나간 후 대기업 본사 임직원들이 몰려 내려와 입주민들 및 필자와 수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기업 측은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해 줄 수 있으나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체 세대의 배관교체는 해줄 수 없다고 고

집을 부렸다.

이런 와중에도 배관은 계속 파열되어 누수세대는 점점 늘어만 갔고 입주민들의 불만은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었다.

시공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입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필자에 대한 불만도 점점 고조되어갔다.

입주민들은 필자에게 과거 시공회사에서 보험처리한 보험회사에 찾아가 확인서를 받아오라, 이와같은 유사 피해사례를 수집해 오라 등등을 요구했다. 필자는 서울 광화문 소재의 보험회사를 찾아가 확인서를 받아오고 유사 피해사례 수집을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부산지역의 타 아파트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부산지역에서 2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유사 피해사례가 있었으나 입주자들이 집값하락을 우려하여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아쉬움을 머금고 돌아서야 했다.

또한 설비공사공제조합 부산지점에 찾아가 이 제품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기도 했다.

필자의 노력과는 달리 대기업에서는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 사건해결을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보상하는 방안으로 진행시키고 있었다.

## 6. 제품결함을 입증할 인정기관을 찾아 맴들고

분명 제품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명백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의 부도덕성을 고발하기 위해 제품하자를 입증할 공인기관을 찾아나서기로 작정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지방중소기업청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를 증명해 줄 수 없고 서울에 있는 화학연구조사소에 연락해 보라고 했다.

서울의 화학시험연구소에 연락해 보니 금속분야 아니니, 비금속분야 아니니 하면서 서로 자기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계속 미루기만 했다.

몇차례의 전화 끝에 부산에 화학검사연구원 분

원이 있으니 그리로 가보라는 답변을 들었다. 부산에 있는 화학검사연구원 분원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갔으나 여기서도 하자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면서 사설 하자보수업체를 소개해 주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자기네 기관에서 그 제품을 음용수용관으로 인정해 주었다면 그 제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그런데도 이를 증명할 수 없다니!

하는 수 없이 사설 하자보수업체로 찾아가니 여기서는 제품이 비금속이니 부산시 건설자재시험소로 가보라고 했다.

다시 부산시 건설자재시험소로 찾아가니 여기서도 신제품은 검사할 수 있어도 사용중인 제품은 검사해 줄 수 없다면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도 역시 신제품만 시험하지 사용중인 제품은 검사가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불량제품을 판정할 기관이 국내에는 하나도 없단 말인가?

이러한 현실에서 부실시공 추방이니, 견실시공 운운 등을 과연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인가?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과 및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 보았으나 역시 헛수고였다.

입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대기업 임직원들이 아예 아파트 주변 여관에 진을 치고 입주민과 개별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문제해결의 노력 수준이 겨우 이정도인가? 한심했다.

갈수록 태산이었다. 급기야 지역 기초단체 의원 및 광역의원,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개입되었다. 입주민들이 민원을 청원하자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장조사를 내려오고, 기초의회 의원 및 광-



전면교체는 불가능하고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만 그때 그때 보수를 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문제점을 고발하겠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함께 참석했던 입주민들 측에서 “건설 회사가 전면교체 후 보상하라”고 난리를 쳤고 필자는 계속하여 같은 주장만 되풀이했다.

한 시의원은 “입주민들께서는 왜 시공회사 박부장처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느냐?”고 묻자 입주민들 측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또한 분과위원장이 “대기업과 3억원 보상 합의설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이냐?”라고 묻자 입주민들 측에서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펼쳐 뛰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오자 입주민들은 필자에게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발언하지 않았다고 난리였다.

그들에게 “전면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관련법적 근거를 대라”는 필자의 공허한 울림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그런데 정작 이상한 것은 입주민들의 태도였다. 뜻을 함께하여 대기업에 보상을 요구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의회 청문회에서는 제품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불만도 토로하지 않았고 무조건 시공회사 담당자인 필자에게만 불만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더구나 함께 참석키로 한 제품생산업체 담당자는 얼굴조차 내밀지 않은 것이 석연치 않았다.

### 8. 입주민들과 자재생산업체가 결합하여 시공회사에 압력을 가하고

대기업에서는 필자에게 자사가 생산한 제품이 불량이라는 공인기관의 판정도 없이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자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법적 대

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제품불량이 명확한데도 공인기관에서 하자판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대기업의 행위에 심한 분노를 느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대기업은 청문회 개최전 입주민들과 보상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다만 시공회사가 제품생산업체에 피해보상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어야만 최종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상태였다.

입주민들과 제품생산업체가 뜻을 함께 하고 시공회사에 압박을 가해왔다.

그야말로 앉아서 당해야 하는 판이었다. 입주민과 제품생산업체가 서로 하나되어 시공사에 압력을 가해오니 실로 답답한 일이었다.

### 9. 비파괴검사로 제품결함 밝혀져

공인기관에서 하자판정을 받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필자는 문제를 혼자 해결키로 작정하고 관련서적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순간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그렇다! 용접비파괴검사를 이용해 보자!

불량 파이프를 가지고 모교인 창원기능대학으로 달려갔다.

파이프를 반으로 절단하여 비파괴검사(액체침투탐상검사)를 실시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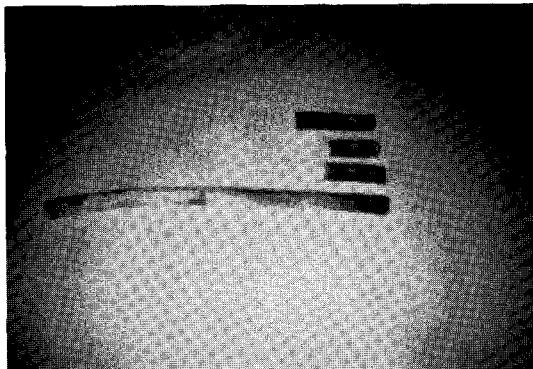
먼저 관 내면 부위에 침투액을 뿌린 후 10분이 경과한 뒤 신너로 제거한 다음 형광제를 살포한지 얼마지나지 않자 관 내면에서 크랙 및 기공 편홀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다시 관 외면에 비파괴검사를 실시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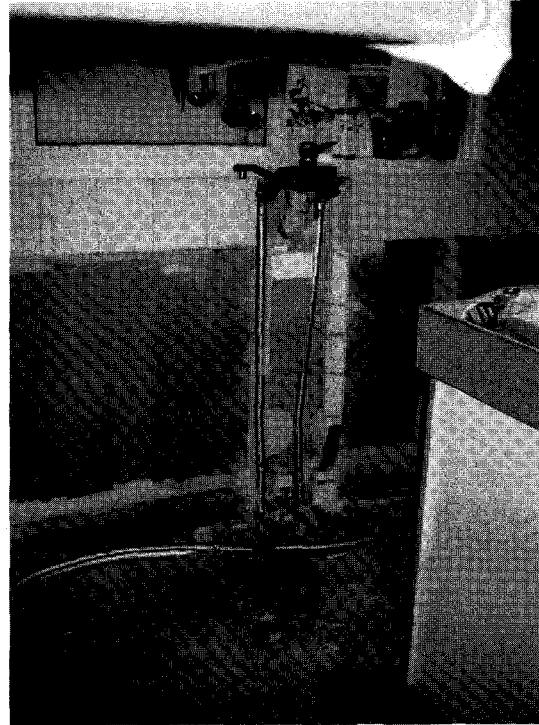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드디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관 내면에서 크랙 및 편홀 등이 발생된 반면 관 외면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결국 파이프는 시공상 또는 외부여건에 의해 손상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결함에 의한



비파괴시험에 사용되었던 시료



PB배관재로 쌩크수전 배관 교체

### 하자가 아닌가!

이 사실을 교수님 명의로 확인해 달라고 부탁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비파괴검사 업체를 소개해 주셨다.

곧바로 입주자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들과 함께 시료를 채취하여 비파괴검사시험 용역업체에 시험을 의뢰했다.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관 외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관 내부에서는 크랙 및 편홀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보고 홍분하는 필자에 의해 입주민들 반응은 시큰둥 했다.

시험검사서를 비롯하여 이 문제의 발생배경, 그간의 모든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한 내용, 제품생산업체와의 통화기록 등의 자료와 함께 입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45페이지 분량)을 곧바로 작성하여 대기업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며칠이 지나도 대기업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얼마 뒤 입주민들과 제품생산업체가 3억원의 보상합의를 보았다는 소식을 소문을 통해 들었다.

입주민 대표들이 월요일 아침 일찍 회사로 몰려왔다.

그들의 요구는 「건설회사의 현재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세대의 배관을 전면교체 해 줄 것과 제품생산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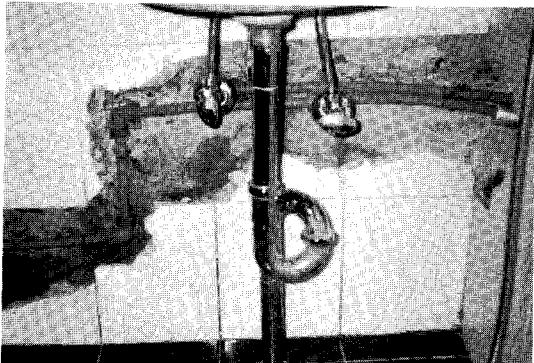
입주민들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입주민 대표중 한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자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다.

입주민 대표들과 심한 몸싸움과 함께 욕설이 오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매일 퇴근후 입주자대표회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다시피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겨우 이렇단 말인가.

입주민들이 돌아간 후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설비부장 폭행미수사건에 대해 해명하라」는 내



PB배관재로 안방 회장실 배관 교체



PB배관재로 주방부분 배관 교체

용의 공문이 팩스로 날아들었다.

필자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물리적 폭행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언어폭력이니 먼저 폭언한 입주민 대표가 사과하면 정중히 사과하겠다」는 공문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에 팩스로 발송했다.

입주자대표들은 폭행미수사건에 대해 필자로부터 공식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버티었다. 필자도 폭언을 한 입주자 대표가 먼저 사과를 해야만 사과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을 즈음, 몸 담고 있는 회사 회장님께서 조용히 부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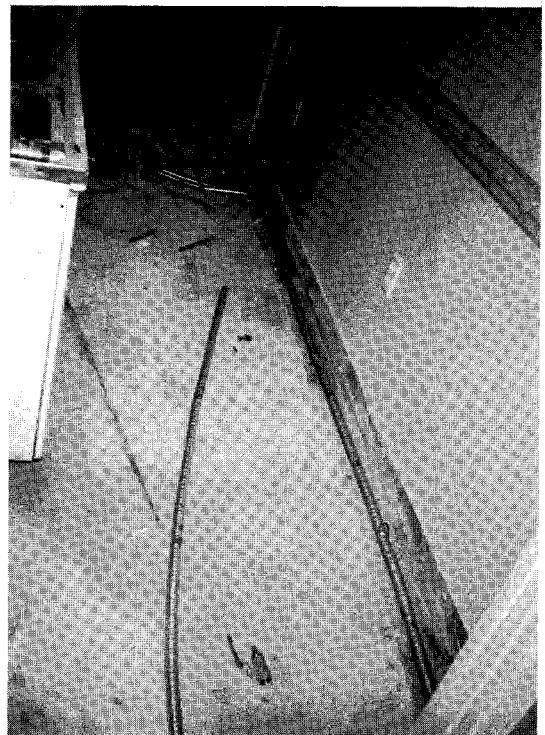
회장님은 “자네 기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단 먼저 사과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입주자 대표들과 만났으나 필자의 입에서는 사과의 말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입주자대표 회장이 먼저 필자에게 “일부 대표들이 지나친 이기심에서 비롯한 행동이니 이해를 하라”면서 정중히 사과했다.

그 말은 들은 순간 필자도 모르게 죄송하다는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99년 5월 19일 모든 것이 끝났다. 문제의 파이프를 처음 현장에 시공한지 5년만의 일이었다.

며칠 뒤 입주자대표 회장이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다. 저녁식사 자리에서 입주민대표들은 필자에게 입주민들의 이름으로 된 감사패를 주었다.



PB배관재로 거실부분 배관 교체

감사패를 받는다는 자체가 내키지는 않았으나 감사패 내용에 새겨진 글귀를 보는 순간, 공고에서 배관을 전공하고 설비업계에 뛰어든 후 최대의 보람으로 다가왔다.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여부

**Q** ① 수급인의 부도로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 중『수급인의 파산등』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A** 질의 ①에 대하여: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

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보나,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질의 ②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 중『수급인의 파산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수급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귀하께서는 설비분야 전문가로서 입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러나 「건설회사가 현재 누수중인 세대의 배관 교체공사 및 제품생산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해달라」는 입주민들이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다.

그동안 필자가 겪은 고통이 너무나도 커고, 시공회사가 입은 피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제품결함임에도 보상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역울했기 때문이었다.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회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회장님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라”고 하셨다. 필자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간청드렸으나 “자네의 심정은 이해하나 기업도 의상 입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좋다”는 회장님의 지시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그 후로 직접 현장에 나가 배관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말이 배관교체지 입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세대 내에서 교체작업이란 입주민이나 작업자 모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작업도중 기술자의 팔이 부러지고, 콘크리트 바닥을 깨다보니 온 세대내가 먼지로 뒤덮이고, 작업으로 인한 소음이 온 아파트 입주민에게 고통을 주었다.

배관자재 한번 잘못 선정하여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

그간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상대로 무려 3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아내고 보니 실로 감개무량했다. 그것도 IMF의 여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받아냈으니 말이다.

설비업계에 뛰어든지 20년만에 일에 대한 보람을 만끽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후 느끼는 보람은 커다. 특히 하자가 발생되면 무조건 시공회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과, 국회 의원이 동원되어도 하자판정 하나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우리 건설업계의 현실 속에서 일궈낸 보람이니 글로 표현해 무엇하랴.

## 9. 결론

지금도 발주처에서는 하자가 발생되면 그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심지어 시공회사가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하자보증기관에 하자보증금 인출을 요청하기 때문에 시공회사는 원인을 규명할 시간도 없이 하자보수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하자처리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구조적 모순점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설비공사가 건축공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건축은 이를 등한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체의 혈관과도 같이 중요한 설비공사의 시공업체인 설비전문건설업체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원도급업체 또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일부 건설업체 담당자들이 멧떳지 못한 방법으로 자재를 선정하므로써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사용하라고 강요하면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현실이 예나 지금이나 변치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감리 또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해 건설회사에서 자재승인을 요청하면 객관적인 판단없이 이를 승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건축공사 준공후 하자발생 빈도가 높고 민원발생 빈도도 높은 부분이 바로 설비분야이다. 이들 하자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시공상의 하자는 보수가 간단하나 이번 경우처럼 자재의 불량 또는 설계잘못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실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하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모순과 제품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명백한데도 이를 판정할 공인기관 하나 없어 건설회사가 입는 피해는 실로 크다.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모순점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경우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정부 당국에서도 하자판정 공인기관을 설립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신속한 하자판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우리 설비기술자들은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공사에 임하여 업무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몇푼의 출지에 회사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욕심만 쟁여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또한 관급공사 등에서 일부 몰지각한 감독들이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특정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특히 벽속에 매설되는 파이프 등은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건설회사로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자재 선정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자재 납품 후에는 납품확인서와 함께 하자보수보험증권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 설비 \*